

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의안 번호	85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1년 월 일
발 의 자 : 김영길 · 고호근 · 황세영 · 이효상
· 서경환 · 김순점 의원(6명)

1. 개정사유

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으로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2조(감사) 및 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의 일부 조문 변경
 - ▶ “7일 이내” ⇒ “9일의 범위에서”
 - ▶ “증언 또는 진술” ⇒ “허위증언 · 선서거부 ·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 서류 미제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”
 - ▶ “4분 자유발언” ⇒ “5분 자유발언”
 - ▶ 규정에 관한 질문 세부사항 추가
- 법령정비 기준
 - ▶ 다음 각호의 1과 ⇒ 다음 어느 하나
 - ▶ 아니된다 ⇒ 안 된다
 - ▶ 하여야 ⇒ 해야
 - ▶ 기타 ⇒ 그 밖에 등

3. 근거법규

-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 및 5항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
- 지방자치법 제61조(위원회의 개회)

○ 지방자치법 제66조5항(의안의 발의)

4.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따로붙임

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등록하여야”를 “등록해야”로 한다.

제7조 제1항, 제3항 및 제4항 중 “제출하여야”는 “제출해야”로

제5항 중 “요구하여야”는 “요구해야”로 한다.

제8조 제2항 중 “대하여”를 “대해”로 한다.

제5항 중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한다.

제12조 제2항 중 “아니하고”를 “않고”로 한다.

[신설]

제12조의2(의장, 부의장의 겸직제한) 의회는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.

제13조 제2항 중 “정하여야”는 “정해야”로 하고,

제4항 중 “부의된”을 “부쳐진”으로 한다.

제16조 제2항 중 “의장이”를 “의장 또는 위원장이”로 한다.

제18조 중 “첨부하여야”를 “첨부해야”로 하고, “대하여는”을
“대해”로 “아니하고”를 “않고”로 한다.

제21조 제1항 중 “부의한다”를 “부친다”로 한다.

제2항 중 “아니할”을 “않을”로 한다.

[신설]

제21조의2(조례안 예고)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(의원 발의 건)에 대하여 그 취지·주요내용·전문(신·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)·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(이하 “입법예고”라 한다) 예고할 수 있다.

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.

③ 입법예고에 관한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준용한다.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.

제23조 제2항 중 “부의할”을 “부칠”로 한다.

제24조 중 “아니한다”는 “않는다”로 한다.

제26조 제1항 중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한다.

제27조 제1항 중 “청구하여야”를 “청구해야”로 “얻어야”를 “받아야”로 한다.

제2항 중 “얻어야”를 “받아야”로 한다.

제33조 제3항 중 “통지하여야”는 “통지해야”로 한다.

제36조 제1항 중 “아니된다”를 “안 된다”로 한다.

제37조 중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그렇지 않다”로 한다.

제39조 제1항 중 “4분”을 “5분”으로 한다.

제2항 중 “4분”을 “5분”으로 “신청하여야”를 “신청해야”로 한다.

제41조 제1항 중 “통지하여야”를 “통지해야”로 한다.

제43조 제3항 중 “아니하고”를 “않고”로 한다.

제44조 제1항 중 “선포하여야”를 “선포해야”로 한다.

제2항 중 “대하여”를 “대해”로 한다.

제47조 제3항 중 “표결하여야”를 “표결해야”로 한다.

제48조 제3항 중 “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”를 “않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”로 한다.

제49조 제1항 중 “대하여”를 “대해”로 “다음 각호에 의하여”를 “다음에 의하여”로 한다.

제50조 중 “선포한다”를 “의장석에서 선포해야한다”로 한다.

제53조 제1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항 중 “관하여”를 “관해”로 “아니하고”를 “않고”로 한다.

제54조 제1항 중 “위하여”를 “위해”로 “관하여는”을 “관해서는”으로 “아니할”을 “않을”로 한다.

제2항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 “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”를 “거절해서는 안 된다”로 한다.

제3항 중 “하여서는 아니된다”를 “해서는 안 된다”로 한다.

제4항 중 “공개하지 아니한”을 “공개되지 않은”으로 “아니된다”를 “안 된다”로 한다.

제56조 중 “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 할 수 없다.”를 “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 할 수 없다. ② 폐회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”로 한다

제57조 중 “아니하며” 를 “않으며” 로 “1인” 을 “1명” 으로 한다.

제60조 제4항 중 “아니하는” 을 “않은” 으로 “아니하는 한” 을
“않으면” 으로 한다.

제60조 제6항 중 “각호의 1에” 를 “어느 하나에” 로 “요청하여야” 를
“요청해야” 로 한다.

제6항 2호를 삭제한다.

제6항 4호 중 “국가공무원법” 을 “지방공무원법” 으로 한다.

제61조 제1항 중 “그러하지 아니한다” 를 “그렇지 않다” 로 한다.

제64조 제2항 중 “요구하여야” 를 “요구해야” 로 한다.

제65조 제3항 중 “아니된다” 를 “안 된다” 로 한다.

제66조 제1항 중 “보고하여야” 는 “보고해야” 로,
제2항 중 “기재하여야” 는 “기재해야” 로 한다.

제68조 제2항 중 “아니된다” 를 “안 된다” 로 한다.

제69조 중 “허용하여야” 를 “허용해야” 로 한다.

제70조 제2항 중 “부의한다” 를 “부친다” 로 한다.

제3항 중 “아니한” 을 “않을” 로 한다.

제72조 제1항 중 “부의 할” 을 “부칠” 로 한다.

제74조 제2항 중 “부의하도록” 을 “부치도록” 으로 한다.

제75조 제1항 중 “하여야” 를 “해야” 로 하고,
제3항 중 “출석 · 답변하여야” 를 “출석 · 답변해야” 로 한다.

제75조 제4항 을 삭제한다.

[신설]

제75조의2(구정에 관한 질문) ①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
구정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(이하 “구정질문” 이라

한다)을 할 수 있다.

- ② 질문자 수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③ 구정질문을 하고자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.
- ④ 보충질문은 제1항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일괄질문·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·일답방식으로 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의 본질문의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, 4항의 보충질문 시간은 15분을 초과 할 수 없다. 이 경우 제4항의 보충질문 시간은 그 답변시간을 포함한다.

제76조 제1항 중 “제출하여야”는 “제출해야”로,

제2항 중 “답변하여야”는 “답변해야”로, “통지하여야”는
“통지해야”로 한다.

제78조 제1항 중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한다.

제80조 제2항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 한다.

제3항 중 “부의하여야”를 “부쳐야”로 한다.

제83조 중 “하여서는 아니된다”를 “해서는 안 된다”로 한다.

제83조 제6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7조 제4항 중 “기재하여야”를 “기재해야”로 한다.

제88조 제1항 중 “각호의 1에”를 “어느 하나에”로 “대하여는”을
“대해”로 “아니한다”를 “않는다”로 한다.

제88조 제1항 2호 중 “주기가 있는 자”를 “음주 상태에 있는 자”로 한다.

제88조 제1항 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9조 제8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0조 제1항 중 “아니하기로”를 “않기로”로 한다.

제4항 중 “하여서는 아니된다”를 “해서는 안 된다”로 한다.

제91조 제3항 중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한다.

제5항 중 “부의할”을 “부칠”로 한다.

제92조 제2항 중 “회부하여야”를 “회부해야”로 한다.

제93조 제1, 2항 중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한다.

제94조 중 “아니한다”를 “않는다”로 한다.

제96조 제1항 중 “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부터”를 “윤리특별위원회
로부터”로 “부의하여”를 “부쳐”로 “의결하여야”를
“의결해야”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등록) -----등록하여야 한다.	제2조(등록) -----등록해야 한다.
제7조(청가 및 결석) ①-----제출하여야 한다. ② (생 략) ③ ----- 제출하여야 한다. ④ ----- 제출하여야 한다. ⑤ ----- 요구하여야 한다. ⑥ (생 략)	제7조(청가 및 결석) ①-----제출해야 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제출해야 한다. ④ ----- 제출해야 한다. ⑤ ----- 요구해야 한다. ⑥ (현행과 같음)
제8조(의장 · 부의장 선거) ① (생 략) ② -----대하여-----. ③ ~ ④ (생 략) ⑤ --- 하여야 ---. ⑥ (생 략)	제8조(의장 · 부의장 선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대해-----. ③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 해야 ---. ⑥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의장 · 부의장의 사임) ① (생 략) ② -----아니하고 표결한다.	제12조(의장 · 부의장의 사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않고 표결한다.
[신설]	제12조의2(의장 · 부의장의 겸직제한)의회는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.
제13조(회기) ① (생 략) ② -----정하여야 --. ③ (생 략) ④ --- 회의에 부의된 -----.	제13조(회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정해야 --.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 회의에 부쳐진 -----.
제16조(휴회) ① (생 략) ② -----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-----.	제16조(휴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의장 또는 위원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-----.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의사일정의 변경) -----이유서를 첨부 <u>하여야</u> 하며 그 동의에 <u>대하여는</u> 토론을 하지 <u>아니하고</u> 표결한다.	제18조(의사일정의 변경) -----이유서를 첨부 <u>해야</u> 하며 그 동의에 <u>대해</u> 토론을 하지 <u>않고</u> 표결한다.
제21조(의안의 회부)① ----- 본회의에 <u>부의</u> 한다. ② --- 이루어지지 <u>아니할</u> 때에는 -----. [신설] 제21조의2(조례안 예고)	제21조(의안의 회부)① ----- 본회의에 <u>부친</u> 다. ② --- 이루어지지 <u>않을</u> 때에는 -----. 제21조의2(조례안 예고)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(의원 발의건)에 대하여 그 취지 · 주요내용 · 전문(신 · 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) ·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(이하 “입법예고”라 한다)예고할 수 있다.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. ③ 입법예고에 관한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준용한다.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.
제23조(심사기간)① (생 략) ② ----- <u>부의할</u> 수 있다.	제23조(심사기간)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부칠</u> 수 있다.
제24조(위원회의) ----- 아 니 한 다 -----.	제24조(위원회의) ----- 않 는 다 -----.
제26조(수정동의)① --- <u>제출하여야</u> 한다. ② ~ ④ (생 략)	제26조(수정동의)① --- <u>제출해야</u> 한다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27조(의안 동의의 철회)① ---- 청구하여야 한다. -----동의를 <u>얻어야</u> 한다. ② --- 동의를 <u>얻어야</u> 한다.	제27조(의안 동의의 철회)① ---- 청구해야 한다. -----동의를 <u>받아야</u> 한다. ② --- 동의를 <u>받아야</u> 한다.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(의제외 발언의 금지)① --- 반하여서는 아니된다. ② (생 략)	제36조(의제외 발언의 금지)① --- 반하여서는 안 된다. ② (현행과 같음)
제37조(발언회수의 제한) -----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37조(발언회수의 제한) -----그렇지 않다.
제39조(4분 자유발언)①-----4분 이내의 발언(이하 “4분 자유발언”이라 한다)----. ② 4분 자유발언-----신청하여야 한다.	제39조(5분 자유발언)①-----5분 이내의 발언(이하 “5분 자유발언”이라 한다)----. ② 5분 자유발언-----신청해야 한다.
제41조(토론의 통지)-----통지하여야 한다.	제41조(토론의 통지)-----통지해야 한다.
제43조(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) ① ~② (생 략) ③-----아니하고 표결한다.	제43조(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) ① ~ ②(현행과 같음) ③-----않고 표결한다.
제44조(표결의 선포)① --- 선포하여야 한다. ② ----- 안건에 대해 ---.	제44조(표결의 선포)① --- 선포해야 한다. ② ----- 안건에 대해 ---.
제47조(표결방법)① ~ ② (생 략) ③-표결하여야 한다. ④ (생 략)	제47조(표결방법)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-표결해야 한다. ④ (현행과 같음)
제48조(투표절차)① ~ ② (생 략) ③-----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④ (생 략)	제48조(투표절차)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. ④ (현행과 같음)
제49조(수정안의 표결순서)① 동일 의제에 대 하여-----다음 각호에 의하여 -----. ② (생 략)	제49조(수정안의 표결순서)① 동일 의제에 대 해-----다음에 의하여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50조(표결결과 선포)----의장은 그 결과를 <u>선포한다.</u>	제50조(표결결과 선포)----의장은 그 결과를 <u>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.</u>
제53조(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)①----기타 발언자는----. ②---- <u>관하여</u> ---- <u>아니하고</u> ----.	제53조(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)①----그 밖에 발언자는----. ②---- <u>관해</u> ---- <u>않고</u> ----.
제54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①--질서유지를 <u>위하여</u> ---- <u>관하여는</u> 발언자와---- <u>아니</u> 할 수 있다. ②---- <u>아니할</u> ----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. ③-- <u>하여서는</u> 아니된다. ④ <u>공개하지 아니한</u> ---- <u>아니된다</u> .----. ⑤ (생 략)	제54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①--질서유지를 <u>위해</u> ---- <u>관해서는</u> 발언자와---- <u>않을</u> 수 있다. ②---- <u>않을</u> ----거절해서는 안 된다. ③-- <u>하여서는</u> 안 된다. ④ <u>공개되지 않은</u> ---- 안 된다.----. ⑤ (현행과 같음)
제56조(본회의중 위원회 개회)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.	제56조(본회의중 위원회 개회)①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. ②폐회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.
제57조(위원회에서의 동의)---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면 동의자 외 <u>1인</u> 이상의 -----.	제57조(위원회에서의 동의)---찬성자를 요하지 않으며 동의자 외 <u>1명</u> 이상의 -----.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0조(전문가의 활용)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----- <u>아니하는</u> ----- <u>아니하는</u> 한-----.</p> <p>⑤ (생 략)</p> <p>⑥ --- 각호의 1에 ----- <u>요청하여야</u> 한다 -----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신체 · 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위촉기간내</u> <u>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</u> <u>경우.</u></p> <p>3. (생 략)</p> <p>4. <u>국가공무원법</u>-----.</p> <p>5. (생 략)</p>	<p>제60조(전문가의 활용)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않은</u> ----- <u>않으면</u>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 <u>어느</u> <u>하나에</u> ----- <u>요청해야</u> 한다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삭제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「<u>지방공무원법</u>」-----.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1조(위원회의 발언)①-----<u>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61조(위원회의 발언)①-----<u>그렇지 않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4조(연석회의)① (생 략)</p> <p>②-----<u>요구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64조(연석회의)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<u>요구해야</u> 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5조(공청회)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-----<u>아니된다.</u></p> <p>④ (생 략)</p>	<p>제65조(공청회)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<u>안 된다.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6조(심사보고서의 제출)①--<u>보고하여야</u> 한 다.</p> <p>②-----<u>기재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66조(심사보고서의 제출)①--<u>보고해야</u> 한다.</p> <p>②-----<u>기재해야</u> 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68조(위원회 회의록)① (생 략) ②----- <u>아니된다.</u> ③ (생 략)	제68조(위원회 회의록)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<u>안 된다.</u> ③ (현행과 같음)
제69조(비공개 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 지)----- <u>허용하여야 한다.</u>	제69조(비공개 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 지)----- <u>허용해야 한다.</u>
제70조(예산안 심의)① (생 략) ②----- <u>부의한다.</u> ③-----마치지 <u>아니한</u> -----.	제70조(예산안 심의)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<u>부친다.</u> ③-----마치지 <u>않을</u> -----.
제72조(예산안의 의결)① ----- <u>부의할</u> 수 있다.② (생 략)	제72조(예산안의 의결)① ----- <u>부칠</u> 수 있 다 ② (현행과 같음)
제74조(결산의 심사)① (생 략) ②----- <u>부의하도록</u> 한다. ③ (생 략)	제74조(결산의 심사)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<u>부치도록</u> 한다. ③ (현행과 같음)
제75조(구청장등의 출석요구)①----- <u>하여야</u> 한 다. ② (생 략) ③----- <u>출석 · 답변하여야</u> 하며-----. ④제1항 또는 ----- <u>송부하여야</u> 한다.	제75조(구청장등의 출석요구)①----- <u>해야</u> 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<u>출석 · 답변해야</u> 하며-----. ④ < 삭제 >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[신설]</p> <p><u>제75조의2(구정에 관한 질문)</u></p> <p>제76조(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)①-----제출하여야 -----.</p> <p>②-----답변하여야 -----통지하여야 -----.</p> <p>③ (생 략)</p> <p>제78조(사직)①-----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③ (생 략)</p>	<p>제75조의2(구정에 관한 질문) ①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(이하 “구정질문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질문자 수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</p> <p>③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.</p> <p>④보충질문은 제1항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일괄질문·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·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⑤제1항의 본 질문의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, 제4항의 보충질문 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. 이 경우 제4항의 보충질문 시간은 그 답변 시간을 포함한다.</p> <p>제76조(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)①-----제출해야 -----.</p> <p>②-----답변해야 -----통지해야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8조(사직)①----- 제출해야 한다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80조(답변서의 위원회 심사등)① (생 략) ②---제출하지 <u>아니한</u> ----. ③--- <u>부의하여야</u> 한다. ④(생 략)	제80조(답변서의 위원회 심사등)① -----. ②---제출하지 <u>않으</u> ----. ③--- <u>부쳐야</u> 한다. ④ (현행과 같음)
제83조(회의의 질서유지)--- <u>하여서는 아니된</u> 다. 1. ~ 5. (생 략) 6. <u>기타</u> -----.	제83조(회의의 질서유지)--- <u>해서는 안 된다</u> 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그 밖에</u> -----.
제87조(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) ① ~ ③ (생 략) ④ --- <u>기재하여야</u> 한다.	제87조(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 <u>기재해야</u> 한다.
제88조(방청의 제한)①----- <u>각호의 1에</u> 해당하는 자에 <u>대하여는</u> 방청을 허가하지 <u>아니한</u> 다. 1. (생 략) 2. <u>주기가 있는</u> 자. 3. (생 략) 4. <u>기타</u> -----. ② ~ ③ (생 략)	제88조(방청의 제한)①----- <u>어느 하나에</u> 해당하는 자에 <u>대해</u> 방청을 허가하지 <u>않는다</u> 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음주상태에 있는</u> 자.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에</u> -----.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제89조(방청인의 준수사항) 1. ~ 7. (생 략) 8. <u>기타</u> -----.	제89조(방청인의 준수사항)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<u>그 밖에</u> -----.
제90조(녹음 · 녹화등)①----- <u>아니하기로</u> ----. ② ~ ③ (생 략) ④ --- <u>하여서는 아니된다</u> .	제90조(녹음 · 녹화등)①----- <u>않기로</u> ----. ②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 <u>해서는 안 된다</u> .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1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 ~ ② (생 략) ③-----<u>제출하여야</u> -----. ④ (생 략) ⑤ -----<u>부의할</u> 수 있다.</p>	<p>제91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<u>제출해야</u>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<u>부칠</u> 수 있다.</p>
<p>제92조(징계요구 협의) ① (생 략) ②----<u>회부하여야</u> 한다.</p>	<p>제92조(징계요구 협의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<u>회부해야</u> 한다.</p>
<p>제93조(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) ①----- <u>하여야</u> 한다. ②---- <u>하여야</u> 한다-----<u>하여야</u> 한다.</p>	<p>제93조(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) ①----- <u>해야</u> 한다. ②---- <u>해야</u> 한다-----<u>해야</u> 한다.</p>
<p>제94조(의사의 비공개)-----<u>공개하지 아니한다.</u></p>	<p>제94조(의사의 비공개)-----<u>공개하지 않는다.</u></p>
<p>제96조(징계의 의결과 선포)①의장은 <u>징계자</u> <u>격특별위원회로부터</u> -----<u>부의하여</u> 이를 <u>의</u> <u>결하여야</u> 한다. ② (생 략)</p>	<p>제96조(징계의 의결과 선포)①의장은 <u>윤리특</u> <u>별위원회로부터</u> -----<u>부쳐</u> 이를 <u>의결해야</u> 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</p>

의안심사보고서 (의안번호 853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2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1. 10. 7(금)
- 나. 제안자 : 서경환 의원 외 5명
- 다. 위원회 회부 : 2011. 10. 13(목)
- 라. 위원회 심사 : 2011. 10. 14(금)

3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서경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으로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2조(감사) 및 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의 일부 조문 변경
 - ▶ “7일 이내” ⇒ “9일의 범위에서”
 - ▶ “증언 또는 진술” ⇒ “허위증언 · 선서거부 ·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 미제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”
 - ▶ “4분 자유발언” ⇒ “5분 자유발언”
 - ▶ 구정에 관한 질문 세부사항 추가

4.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 및 5항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
- 지방자치법 제61조(위원회의 개회)
- 지방자치법 제66조5항(의안의 발의)

5. 검토의견 (전문위원 배청숙)

- 지방자치법 개정(2011.7.14 공포, 2011.10.15 시행)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였으며,
-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“4분 자유발언”을 “5분 자유발언”으로 개정하여 타 지방의회의 규형을 맞춰 혼동을 없애고,
-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심도있는 검토와 답변을 듣기위한 일정기간의 시간이 필요함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